디지털 성범죄(불법 합성 및 유포) 대응 및 예방 안내

(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)

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**일명 '딥페이크'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**되는 사례가 있습니다.

디지털 성범죄(불법합성 및 유포) 언론 내용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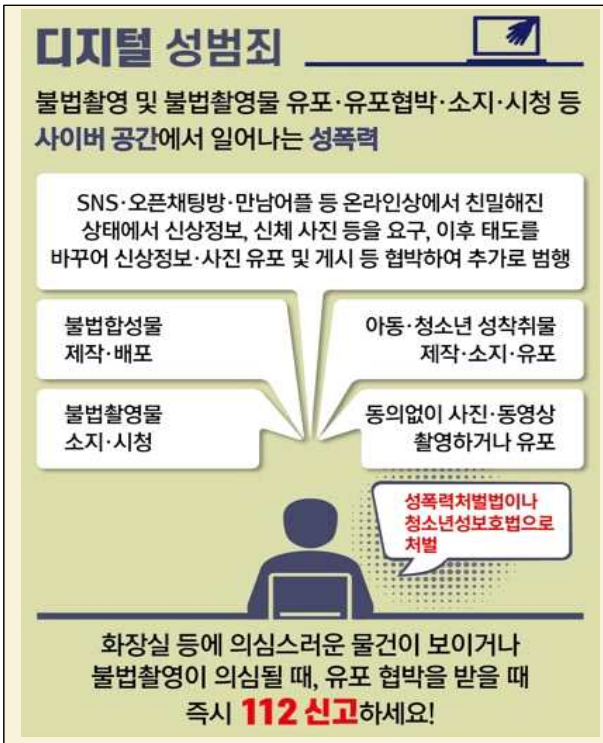
□ 디지털 성범죄 사례

<사례 1>	**학생 A군은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하였다고 진술**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) 적용하여 **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 해당	
<사례 2>	**학생 C군은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,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**
특히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**아동·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,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**받을 수 있습니다. 아동·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.	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) 적용하여 **1년 이상의 유기징역**에 해당	

<사례 3>	**학생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(이른바 유포물)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**고 진술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**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**받을 수 있습니다.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·유포협박·저장·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.	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 적용하여 **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 해당	

□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

♧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?



* 경찰청-교육부, 캠퍼스 안심 소식지('22.10월) 자료 발췌

사진·동영상 불법 촬영·유포	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·소지·유포
뒷모습, 전신, 얼굴,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, 유포	웹하드, 인터넷 사이트, SNS 등에 업로드, 단톡방에 유포, 시청
유포 협박	**불법합성물 제작·배포**
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,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,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	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(소위 지인 능욕)

♧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,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이렇게 행동해요

만남 요구

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
☞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

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
☞ 응하지 않고 캡쳐해서 신고하기

불법촬영 합성영상 유포

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
☞ 즉시 112 신고하기

불법촬영이 의심될 때
☞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

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
☞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

지인이 합성된 사진·영상을 봤을 때
☞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

성적 문자 영상 전송

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
☞ 불쾌함 표현하기 / 대화 중단·신고하기

성적인 욕설, 몸 사진·영상을 받았을 때
☞ 대화 중단·신고하기

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
☞ '신고 / 스팸' 누르기 /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

몸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
☞ 절대 응하지 않기 / 대화 중단하기

*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('20) 자료 발췌

도움을 요청해요

피해 신고

▶ 긴급신고 112

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
safe182.go.kr

▶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→3번
www.kocsc.or.kr 디지털성범죄 신고

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

피해 상담

▶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
(한국여성인권진흥원)
☏ 02-735-8994 / http://d4u.stop.or.kr

▶ 여성긴급전화 1366 ☏ 국번없이 1366